

공공기관 신설 및 존치 평가에 관한 유사제도 연구¹⁾

이 승 혜 연구원

-목 차-

I. 공공기관 신설 및 존치 평가의 필요성	p. 2
II. 공공기관 신설 및 존치 평가의 현황	p. 3
1.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2.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	
III. 유사제도 사례연구	
1. 기금 신설 및 존치 평가	p. 5
2. 부담금 신설 및 운용 평가	
3. 규제 신설·강화 및 심사 평가	
4.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및 경영진단제도	
	p. 9
IV. 시사점 및 결론	

1)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 신설 및 존치 평가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규모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며, 공기업의 순자산가치²⁾는 1,777억 달러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국민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함
- 공공기관은 특수한 목적하에서 설립되기 때문에 고유한 업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설립목적의 달성, 조직생존 논리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사회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분야의 등장 등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정권교체기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즉, 기관에 대한 이해와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 평상시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점검하여 사전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
-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공기관의 자아이익 추구적인(self-interest seeking) 사업 확장으로 공기업 부문의 비대화 초래
 - 둘째, 조직 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적 인력운영 등의 방만한 경영관리
 - 셋째,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화 노력의 유인이 없음
 - 넷째,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으로 고객만족 노력이 미약

2)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청산을 가정할 때 남는 자산을 일컬으며, 공기업 순자산가치가 1천억달러 이상인 곳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1,577억달러), 노르웨이(1,310억달러), 이탈리아(1,054억달러) 등 4개국임. 이는 OECD가 2011년 34개 회원국 중 비교가능한 28개국의 공기업을 비교한 결과임

- 종전에는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관의 남설(濫設) 방지 및 국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기능 적정성 심사 및 구조조정 추진을 의무화하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부족해 현 제도를 보완 및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유사제도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및 기능 점검의 구체적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시의 방향성과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II. 공공기관 신설 및 존치 평가의 현황

- 공공기관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범위설정과 유형구분 및 평가와 감독시스템 등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 「공운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의 구성요소로 공공기관의 신설 타당성에 대한 심사제도와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및 기능 조정제도 등이 도입되었음
- 「공운법」에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와 간략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미비함
- 공공기관의 신설과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는 공공기관의 존치와 연결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위한 존치 평가의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설 및 존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슈임

1.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7조에서는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관의 신설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사절차)** 「공운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① 신설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②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③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④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⑤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⑥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기관신설계획서’를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기관신설계획서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함

■ 공운위의 신설 타당성 심사 사례는 2007년 4월 2일부터 2012년 11월 26일까지 총 73회의 회의 중에서 신설 타당성 심사안은 총 6건이 제안되었고,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

<표 1> 공운위 신설 타당성 심사 사례

공운위 회의	신설 타당성 심사 기관	심사 결과
'09.01.29	기초과학연구원	기관 신설
'08.08.26	감항인증원	수요증가 전까지는 기존기관 활용
'08.08.26	한국장학재단	기관 신설
'08.07.23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관리공단	재원마련대책 미비와 타당성 미흡
'07.08.21	의료연구개발기관	심의 의결
'07.07.18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기관 신설

주: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2012년 5월에 공공기관에 신규지정된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는
의원입법으로 신설 타당성 심사를 받지 않았음

자료: 기획재정부 공운위 회의록 참조

-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신설 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에 기관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공운법」 제정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능적정성 여부를 점검
-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기관신설과 관련된 법률안의 경우는 공운위의 신설타당성 심사를 받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검토가 요구됨

2.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

- 「공운법」 제14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적정성 심사 및 구조조정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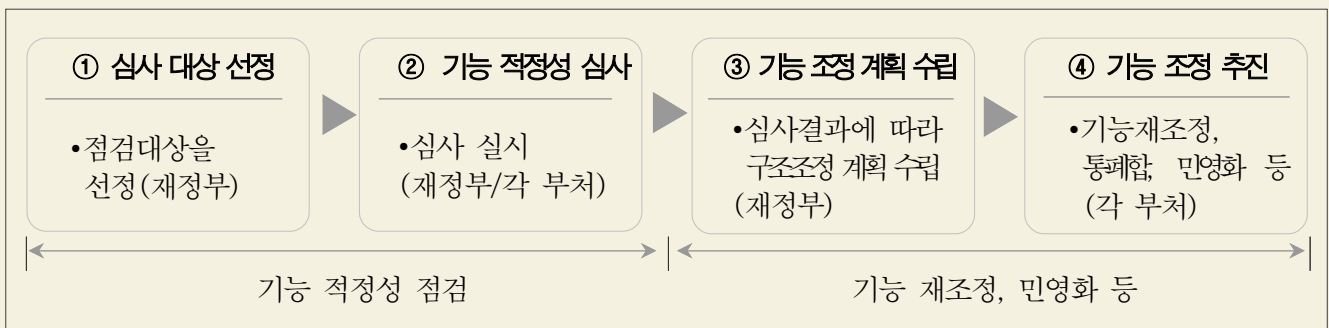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는 공공기관 설립 이후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구조의 변화, 정부 역할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공공기관의 존치는 곧 기관의 폐지·통폐합·이관과 일맥상통함으로, 즉 기능과 사업의 존치필요성을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핵심기능과 사업을 재구축하는 것임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필요성을 점검해 ①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을 확보하고, ②국민의 부담경감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며, ③기관 간의 중복이나 불필요한 사업 및 비효율성을 검토해서 폐지, 통폐합, 이관 등의 절차를 거쳐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으로 재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음

■ 현재의 심사제도는 체계화된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심사할 대상이 선정되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기능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기능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재조정 또는 통폐합, 민영화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 1]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 절차



■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기능 적정성 점검’이라는 명칭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단지 2008년부터 6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경우 이러한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 기능 조정, 민영화, 통·폐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III. 유사제도 사례연구

1. 기금 신설 및 존치 평가

가. 기금 신설 타당성 심사

- |(목적)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가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함
- |(심사 기준)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기존보다 더 효과적인지를 검토
- |(심사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기금 신설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 요청
- | 2006년도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 현황을 보면 기금 수는 60여 개 전후로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으며 2007년 이후로 점차 운용 규모는 커지다가 2011년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2> 기금 수와 규모

(단위: 개, 조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금 수	61	60	60	63	63	64
운용 규모	366.4	308.6	369.6	442.1	476.9	369.3

자료: 2006~2011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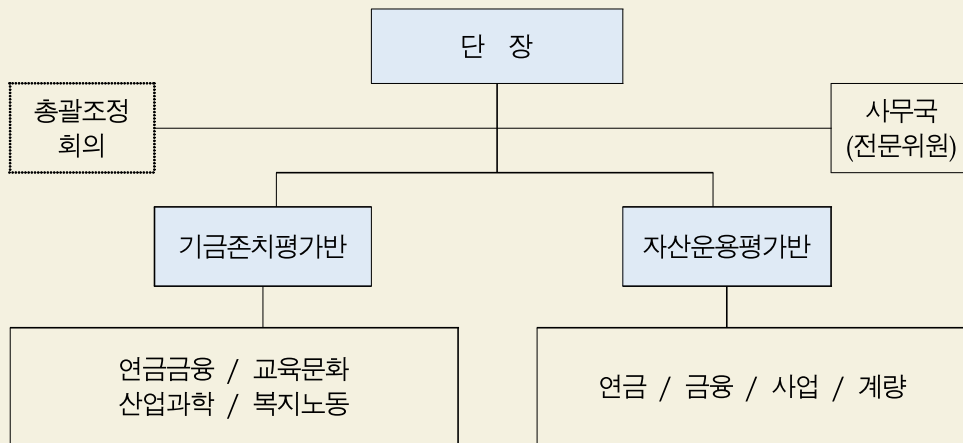
- 2007년에 영화발전기금이 신설되고 문화산업진흥기금과 방위산업육성기금이 폐지
- 2009년에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구조조정정리기금이 신설
- 2010년에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이 폐지되고, 문화재보호기금이 신설
- 2011년에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신설

나. 기금 존치 평가

- **(목적)** 국가재정법 제82조³⁾를 근거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존치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기금의 통·폐합, 중복사업 조정 등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
- **(평가기준)** 기금의 설립목적 유효성, 기금형태 필요성,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 재원의 안정성
- **(평가주기)** 기금존치여부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며, 2004년 첫 평가 이래 2007년과 2010년으로 세 번째로 실시됨
 - 2010년에는 2009년 12월 기준 63개 기금 중 정비계획이 마련된 2개 기금을 제외한 61개 기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음
- **(평가범위)** 기금의 존치 필요성 및 사업운영 방법(운영방식의 효율화 및 사업구조조정 등)
- **(평가주체)** 기금운용평가단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
 - 기금운용평가단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총괄조정회의, 기금존치평가반과 자산운용평가반, 사무국 등으로 구성

3) 국가재정법 제82조(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그림 2] 기금운용평가단 조직



■ **(평가지표 구성)** 정책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자원조성의 적정성 등 3개 분야에서 2개씩, 총 6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지표는 3개 분야별로 제시된 <평가기준>과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기준>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설명
- <평가내용>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항목들을 제시

■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각 지표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 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 전환’ 등으로 판정하여 종합의견을 제시

- 각 지표별 평가 결과, ‘존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금 존치의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조건부 존치’ 가능

■ **(평가 결과 유형)** ①존치, ②조건부 존치, ③타기금과 통합, ④폐지 또는 민간 전환

■ **(평가결과)** ①평가지표별 평가 결과와 ②그 결과를 종합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기금운용평가단의 의견을 제시하는 총평으로 구분하여 제시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는 지표별로 설정된 세부 판단기준(아래 <표 3> 참조)에 평가 대상 기금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표별로 그 평가 결과에 대해 그 사유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함
- 총평은 기금운용평가단이 각 지표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기금 존치 평가 판정절차에 따라 4가지 유형 (1. 존치, 2. 조건부 존치, 3. 예산 또는 타기금에 통합, 4. 폐지 또는 민간 전환) 중 하나로 제시

<표 3> 기금 존치 여부 종합의견 결정기준

평가지표	세부 판단기준	판단 결과
<평가지표 1.1> ① 기금의 설치목적 이 현재에도 유효 한가? (민간사업과 의 차별성)	I. 정부가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가?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II. 기금의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앞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가? III. 기금의 중장기 운용비전이나 방향이 당 초 또는 변경된 기금의 설치목적에 달성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I~III 중 하나 이상 예 → ⑥ 해당사항 없음 → ②
<평가지표 1.2> ② 기금 형태가 필요 한가? (예산과의 차별성)	기금사업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편 성할 경우에도 적절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총사업비 기준 2/3)인가?	예 → ⑥ 해당사항 없음 → ③
<평가지표 2.1 및 2.2> ③ 기금사업이 예산 또는 다른 기금과 차별성이 있는가? (중복성 여부)	현재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일반회계, 특 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 복되거나 중복될 개연성이 있는가? (중복되는 비율이 총사업비 기준 20%를 넘는 가?)	예 → ⑥ 해당사항 없음 → ④
<평가지표 3.1> ④ 재원조성방법이 적정한가?	I. 2009년 자금수지총괄표상 자체수입이 [사업 비+기금관리비+사업운영비+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하인가? II. 2009년 기금조성계획표상 총조성에서 정부 출연과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가? III. 수익자, 원인자, 손피자 부담원칙에 부합하 지 않는 재원이 있는가?	I~III 중 하나 이상 예 → ⑥ 해당사항 없음 → ⑤
<평가지표 3.2> ⑤ 기금의 재원확보 가 안정적인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여의치 않아 향후 기 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 애가 예상되는가?	예 → ⑥ 해당사항 없음 → 존 치
⑥ 고려할만한 특수 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가?	기금 설치 근거법률 이외의 특별법 제정이나 국제 협약, 정부의 정책적 고려 등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기금으로 유지할 필요 가 있는가?	예 → 조건부 존치 해당사항 없음 → 통합 또는 폐지

자료: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참조

■ 지금까지 실시된 기금존치평가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4> 기금존치평가 결과 비교

평가 결과 시행연도	조건부 존치	통합 및 이관	폐지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이관) -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통합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 - 한강 수계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을 수계관리기금으로 통합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여 통합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007년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2010년)
2010년	과학기술진흥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증권정리기금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간 통합 - 4대 수계관리기금 통합 	국가장학기금

자료: 기획예산처(2004.8.27, 2007.5.29) 및 기획재정부(2010.5.25) 보도자료

2. 부담금 신설 및 운용 평가

-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공법상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함
 - 단지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하며,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분담금이라고도 함(「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2조)
-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도입한 이래 부담금의 수는 102개에서 2010년 12월 말 기준 97개로 감소

가. 부담금 신설타당성 심사제도

- **(목적)**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6조에 의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리고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그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함
- **(평가기준)** 부담금의 신설의 명확한 목적, 부과요건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성,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
- **(평가주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담당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3명, 민간 위원 8명, 총 12명으로 구성)

나. 부담금 운용평가

- **(목적)** 「부담금 관리 기본법」⁴⁾ 제8조에 의거하여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

4) 「부담금 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신·증설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제7조), 부담금운용평가 제도(제8조)가 주요 내용

- **(평가주기)** 전면적인 부담금 운용 평가는 2003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3년 주기로 실시

 - 평가주기는 매 3년마다 전체 부담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2003년, 2006년, 2009년 등 세 번의 전수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평가부터 평가대상이 전체 부담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2010년에는 건설관련 29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 실시
 - 2011년에는 산업·환경·금융·문화 분야 41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 실시
 - 2012년에는 보건, 농림, 교육 분야 26개 부담금 평가

- **(평가주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부담금 운용 평가단을 구성

 - 자격은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항목 및 점검사항)** ▲부담금 부과 타당성,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용내역의 건전성, ▲부과요건 등의 법률규정화 여부, ▲부담금 연체 시 적용되는 강제징수 절차 및 가산금 수준의 적정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아래 <표 5>와 같음

- **(평가 결과 유형)**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존치’, ‘통합’, ‘폐지’ 등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

 - 존치: 부과요율 인하, 일몰제 도입,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 개선 등 추가의견 제시
 - 통합: 통합의 구체적 실행방법 및 적정 부과요율 수준 등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
 - 폐지: 단순폐지, 조세·과태료·이용료 등으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 의견 제시
 -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표 5> 부담금 운용평가의 평가항목 및 점검사항

평가항목	점검사항
부담금 부과 타당성	- 부담금으로서 존치 필요성 여부 - 수년간 부과·징수실적 없는 부담금의 존치 여부 - 일몰제(존속기한) 도입 가능성 여부 - 조세(과태료·사용료 등 포함)로의 전환 필요성 여부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 부담금간 또는 조세와 부과대상 및 부과목적 등의 중복 여부
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었거나, 징수액 증가율이 높은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하 타당성 - 부담금 요율수준을 관련된 조세나 다른 부담금의 요율 등과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부담금 사용용도가 부과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 사용용도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기금·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부과목적과 달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부담금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부과요건 등의 법령화 여부	-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하위법령의 위임내용이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 -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부담중 포함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는지 파악하여 제시
부담금 연체 시 적용되는 강제징수 절차 및 가산금 수준의 적정성	- 부담금 연체 시 적용되는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 - 연체 시 적용되는 가산금이나 연체율 수준 등이 적절 한지 여부

자료: 2011년도 부담금평가

3. 규제 신설·강화 및 심사 평가

가. 규제 신설·강화 심사

■(목적) 「행정 규제 기본법」에 의거해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분석과 자체심사를 해

야 하고, 제34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선 점검하고 평가함

|(평가방법) 1·2단계는 부처 내 자체심사이며, 3단계는 외부에서 메타평가를 받음

- 1단계는 **규제영향분석**으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
- 2단계는 **부처의 자체심사**로, 자체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을 통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심사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를 규제의 입안부서가 아닌 기획관리실 등에서 담당하며,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
- 3단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이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해서는 안되며, 법령안의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평가주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현재는 정부위원인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7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로 구성됨

|(평가기준)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 규제영향의 연간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

■ **(평가 결과 유형)** 규제의 중요·비중요 판단에 따라 중요규제는 분과위원회 또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필요시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비중요규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부처에 통보함(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예외사항)**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긴급성 여부를 판단해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2011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249건(비중요규제 포함)을 심사하여 이 중 127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했으며,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 권고된 대상 규제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했음

나. 규제심사제도(규제일몰제)

■ **(목적)** 「행정 규제 기본법」 제8조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규제의 존속기한 설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규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규제실패를 방지하고자 함

■ **(존속기한)** 규제의 존속기한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유형)**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재검토행 일몰제로 구분할 수 있음

-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일몰기한 도래 시 효력을 상실하고 기한연장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함

- 재검토행 일몰제는 일몰기한 도래 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선 등을 재설계하고, 재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치 않음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에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하다⁵⁾는 의견이 있고,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일몰 여부 챙기기에 소홀하다는 점을 의미함

4.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및 경영진단제도

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평가

■ **(목적)**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설립 타당성 검토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 공동사업 등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경영진단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평가범위)** 타당성 검토에는 ①사업의 적정성 여부, ②사업별 수지분석, ③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④주민의 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 ⑤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함

■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의 적정성 검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 검증심의회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

5) 전경련,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12

■ **(평가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 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

-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위촉한 때에 위원의 동의를 받아 명단(성명, 소속)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 심의안건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시도시군구 간 협의 결과 등을 명시하고, 심의 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 **(평가 결정)** 설립심의회위원회는 공정한 설립심의를 위해 심사표(<표 6> 참조)를 마련해 운영해야 하고, 위원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설립에 대한 가부를 결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개정안」을 2012년 7월에 입법예고하며 설립 조건을 강화했음

-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타당성 검토 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함으로써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하고는 있으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음

<표 6> 지방공기업 설립심의 심사표 예시

구분	판단 요소	판단지표	평 가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사업 적정성 (48)	사업의 적정성 (16)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가?	8	6	4	2	0	/8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8	6	4	2	0	/8
	사업의 타당성 (16)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대안·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8	6	4	2	0	/8
	사업의 충실성 (16)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은 있는가?	8	6	4	2	0	/8
사업 경제성 (32)	사업의 수익성 (16)	사업별 수지분석은 적절한가?	8	6	4	2	0	/8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	8	6	4	2	0	/8
	사업구조 적절성 (16)	사업구조 및 조직은 적절한가?	8	6	4	2	0	/8
		인력산정은 적절한가?	8	6	4	2	0	/8
사업 공공성 (20)	복리증진 (10)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8	6	4	2	/10
	파급효과 (10)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10	8	6	4	2	/10
심사결과 종합		찬반 여부	<input type="checkbox"/> 찬 성 <input type="checkbox"/> 반 대					
		결정 사유						

자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안)」 별첨 참조

나. 경영진단제도

-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경영진단제도를 규정
- **(경영진단 범위)** 경영평가 결과 또는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①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③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진단주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밖의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진단 결과)** 사업규모 축소나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공사나 공단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기관장 해임을 권고하거나 회생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영화나 법인청산명령을 내리게 됨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은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의 설립 타당성 심사나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등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왔지만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지침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더해져 사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짐

IV. 시사점 및 결론

■ 앞에서 살펴본 4가지의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와 준치 및 운용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표 7> 신설타당성 심사제도 비교표

	기금 신설 타당성 심사	부담금 신설 타당성 심사	규제 신설·강화 심사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평가
근거법	「국가재정법」 제14조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6조	「행정 규제 기본법」 제34조	「지방공기업법」시 행령 제47조
평가 기준 및 방법	기금의 재원이 목 적사업과의 긴밀한 연계성, 신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효과성	부담금 신설의 명 확한 목적, 부과 건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기존 부 담금과 중복성, 부 담금 부과가 조세 보다 적절한지, 존 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 소한의 기간인지	- 1단계: 규제영향 분석 - 2단계: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 사 - 3단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 1단계: 전문기관 의 타당성 검토 용 역 - 2단계: 용역 결과 검증위원회 - 3단계: 설립심의 위원회 심의
평가주기	기금 신설 시 * 2006년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	부담금 신설 시 * 2001년 동법 제정 이래 시행	상시 * 1989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래 심사제도 운영	기관신설 시 * 2008년 동법 시행령 공포 이후 시행
평가주체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운용심의위 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설립심의위원회

<표 7> 의 계속

<p>평가지표</p>	<p>구체적인 지표 없음</p>	<p>구체적인 지표 없음</p>	<p>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p>	<p>①사업의 적정성 여부, ②사업별 수지분석, ③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④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⑤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p>
<p>평가 결과</p>	<p>기금 신설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p>	<p>부담금 신설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p>	<p>규제의 중요·비중요판단에 따라 중요규제는 분과위원회 또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비중요규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부처에 통보</p>	<p>위원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설립에 대한 가부 결정</p>

<표 8> 존치 및 운용 평가제도 비교표

	기금 존치 평가	부담금 운용 평가	규제심사제도 (일몰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제도
근거법	「국가재정법」 제82조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8조	「행정 규제 기본법」 제8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평가기준 및 방법	기금의 설립목적 유효성, 기금형태 필요성, 사업의 중 복성 및 유사성, 재 원의 안정성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 의 건전성 및 부과 절차의 공정성	- 효력상실형 일몰 제 - 재검토행 일몰제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한 지 방공기업,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 에 비하여 영업수 익이 현저하게 감 소한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상 사업규 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지방공기업
평가주기	3년 * 2004년 처음 평가 도입	3년 * 2003년에 처음 도입 (‘03년·‘06년·‘09년 은 전수 평가했으나, 2010년부터 전체 중 1/3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매년 평가)	상시 * 1989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래 심사제도 운영	매년 * 경영평가 결과 이후
평가주체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존치평가반	부담금운용평가단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정책위 원회)

<표 8> 의 계속

평가지표	정책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3개 분야에서 2개씩, 총 6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부과요율의 적정성, 사용내역의 건전성, 부과요건 등의 법률규정화 여부, 부담금 연체 시 적용되는 강제징수 절차 및 가산금 수준의 적정성	구체적인 지표 없음	구체적인 지표 없음
평가결과	①존치, ②조건부존치, ③타기금과 통합, ④폐지 또는 민간전환	①존치, ②통합, ③폐지	①기한연장, ②재검토, ③폐지	①사업규모 축소, ②조직개편, ③법인청산

- 무엇보다 이들 평가제도가 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분석요소인 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주체, 평가지표가 객관적이어야 하며, 조작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됨
- 각 제도는 근거법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금 및 부담금 관련 제도의 경우 신설 타당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지만 존치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평가지표가 명확한 반면에, 규제와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신설 타당성 평가에는 단계별 평가방법과 지표가 명확하지만 심사와 진단평가에는 평가지표가 없음
- 평가주체와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체평가 또는 외부평가, 상급기관이 시행하는 재평가와 상위평가(메타평가)가 있음
 - 규제와 관련한 평가만 자체평가와 상급기관의 상위평가의 이중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의 기금, 부담금,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제도는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외부평가를 받음

- 평가의 전문성이 평가주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제도의 성과는 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 또는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이 중요함
- 각 평가주체들의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문성이 높은 평가자라 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없는 여건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이 조성되어야 함
- 평가기준은 평가지표의 일정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분류하는 기준이 됨

 - 주로 평가지표는 타당성(validity)와 신뢰성(reliability)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분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제도와 존치·운용 평가제도의 사례들을 보면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가 필요함
- 유사제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할 때의 방향성 및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첫째,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함
 - 기금, 부담금, 규제,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4가지 유사제도는 모두 신설 및 존치(운용) 평가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음
 - 현재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되어 있지만 기능 적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검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설계가 필요함
 - 둘째,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신설 타당성 제도의 경우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의원입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신설에서는 심사와 조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능 적정성 제도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실제 제도가 운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후 보완하여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심사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설 타당성과 기능 적정성, 양자 간에 프로세스가 잘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기관이 신설되고 최소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설립목적 이행 등의 기능 적정성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평가 대상과 단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 부담금, 규제와 같은 경우는 평가대상이 명확하고 구분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조정을 위해서는 ①단위기관 간 관계 및 단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②단위기능이나 역할(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방법을 고려해야 함

- 넷째, 타 제도와 조응성(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과정에서 다른 제도와 충돌하거나 중복된다면 없는 것만 못할 수 있음
 - 신설 타당성 제도는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성이나 민간시장의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능 적정성 제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영평가의 대상인 주요 사업이나 현재 진행형인 사업 이외의 비핵심사업이나 부가사업 등에 대한 평가로 차별성을 확실히 보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평가로 인한 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 2012.7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11
- 기획예산처, 『2003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 2004.1
- ___, 「기금운용평가단에서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토록 제안」, 보도자료, 2004.8.27.
- ___, 「부담금운용평가단 13개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보도자료, 2006.6.14.
- ___, 「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및 「기금존치 평가결과」, 보도자료, 2007.5.29.
- 기획재정부, 「2006년~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 ___, 「기금존치평가 결과」, 보도자료, 2010.5.25.
- ___, 「존치실익이 미흡한 부담금 정비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 2011.4.26.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2010.5.
- 부담금운용평가단, 「부담금 평가」, 2011.8.
- 윤기웅·공동성,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2호, 2012.6.
- 송희준·조택, 「기금관리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 2006.
-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12.
- 한국공기업학회, 『공공기관 기능점검 접근전략 및 모델 개발』, 2008.6.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안)」, 2012.9.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 강화한다」, 보도자료, 2012.7.17.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rc.go.kr>>